

 방통통신위원회		<h1>보도자료</h1>		<i>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</i>	
보도 일시	2022. 12. 21.(수) 배포시점	배포 일시	2022. 12. 21.(수)		
담당 부서	이용자정책국 단말기유통조사팀	책임자	팀 장 윤웅현 (02-2110-1550)	담당자	사무관 이선희 (02-2110-1551)

방통위,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

- 과징금 산정 기준 구체화·명확화로 예측가능성 제고 -

방통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‘방통위’)는 2022년 12월 21일(수) 제65차 방통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시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「이동통신 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(고시, 이하 ‘과징금 부과기준’)」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 ‘적극적 협력시 20% 내 감경’ 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‘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’으로 구체화하고,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및 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.(부과기준 [별표4] III. 제1호)

또한 ‘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·운영시 10% 내 감경’ 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.(부과기준 [별표4] III. 제5호 개정)

마지막으로 ‘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% 내 감경’은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%, 20%, 30%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. (부과기준 [별표4] III. 제6호 개정)

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“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반복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 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·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'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<고시 개정절차> 개정안 마련 ⇒ 위원회 보고 ⇒ 행정예고, 부처협의 등 ⇒ 법제처 ⇒ 규제심사 ⇒ 위원회 의결 ⇒ 관보게재 및 시행

붙임 :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. 끝.



붙임

단말기 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

현 행	개 정 안
<p>Ⅲ. 감경 사유 및 비율</p> <p>1. 방송통신위원회 <u>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</u> 100분의 20 이내</p>	<p>1. <u>사실 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협력한 경우</u></p> <p>가. <u>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 협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</u> :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 이내</p> <p>나. <u>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, 협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</u> : 100분의 10 이내</p>
<p>5. 위반 사업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 소속 임원·종업원, 대리점 또는 판매점 및 그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<u>교육 프로그램</u> 등을 도입·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</p>	<p>5. 위반 사업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 소속 임원·종업원, 대리점 또는 판매점 및 그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 대한 <u>교육, 자율 준수 활동</u> 등을 도입·운영하는 경우</p> <p>가. <u>해당 교육, 자율준수 활동 등의 내용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</u> :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내</p> <p>나. <u>해당 교육, 자율준수 활동 등의 내용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상당부분</u></p>

6.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

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: 100분의 5 이내

6.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

가. 해당 조치로 위반행위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: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내

나. 해당 조치로 위반행위 재발을 상당부분 방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: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이내

다. 해당 조치가 가 및 나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나, 위반행위 재발을 일정부분 방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: 100분의 10이내

제9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부칙>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